

「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보호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방치되어지는 비지정문화재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제1장)
-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(제2장)
-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(제3장)
-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(제4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, 「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방치되어지는 비지정문화재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에 문화재의 보존·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향토문화유산의 보다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·관리를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집행부에서는 개인 및 단체 등 신청자가 향토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 과다한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